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(3쪽 중 제1쪽) 사 업 연 도 2022. 1. 1. ~ 2022.12.31.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㈜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-81-12345 1.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면내용 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 조항 코 드 ④ 감 면 세 액 ( 소 득 금 액) 비 고 ⑤ 비과세 ◯1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･제40조 604 ( ) 별지 제6호서식 ⑩란 해당 금액 ◯10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･부품･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( ) ◯103 606 ⑥ 소 득 공 제 ◯104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( )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◯105 주택임대소득공제(연면적149㎡ 이하) 제55조의2제5항 463 ( ) ◯10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( ) ◯107 458 ⑦ 비과세･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(과세표준＋소득금액) ×세율－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◯108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(갑)의 ④란 해당 금액 ◯109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◯110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◯11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◯11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･제40조 13B ◯11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◯11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◯115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3,000,000 ◯11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◯1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◯118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◯1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8 181 ◯12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9 182 ◯1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･제3호･제5호 197 ◯122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･제4호･제6호 198 ◯1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20제1항 11C ◯12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21제1항 11G ◯125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22 17A ◯126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제외) 제121조의22 17B ◯12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22 13H ◯12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22 13V ◯12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8 13P ◯13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9 13Q ◯13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17제1항제1 호･제3호･제5호 13R ◯13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21제1항 13U ◯1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(최저한세적용대상) 제121조의20제1항 13T ◯134 164 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